

[별표 1] <개정 2011.12.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금사용 목적(제7조의2제2항 관련)

구 분	기 금 사 용 목 적
1. 연구개발 지원	가. 협력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지원 나. 협력중소기업의 연구용·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투자 지원 다. 대기업(「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한 연구용·시험용 시설 활용 지원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마. 협력중소기업의 특허권 신청·보호 지원 바.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협력중소기업에 양도 시 소요비용 지원
2. 인력개발 지원	가. 협력중소기업의 인력채용 및 교육·훈련 지원 나. 대기업이 보유한 교육·훈련시설 활용 지원 다. 협력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위탁 시 소요비용 지원 라. 협력중소기업의 교육·훈련 시설 투자 지원
3. 생산성 향상 지원	가.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제21조에 따른 시설·설비·시스템을 말한다) 투자 지원 나. 대기업이 보유한 생산설비를 협력중소기업에 양도 시 소요비용 지원 다.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자문 지원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시행 지원 마. 대기업이 보유한 직장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직장체

	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 지원 바. 협력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또는 직장체육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
4.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가. 해외시장 조사 및 해외시장 판촉활동 지원 나. 해외사업 수주 및 해외 조달시장 참여 지원